

Korean Tax Update

March 2021, Issue 81

[조세뉴스]

코로나 19 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 개월 연장 (행정안전부) [전문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3.31.까지 제출 (국세청) [전문보기]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전문보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2.26일 국회 통과)이 ‘21.7월 시행될 예정임. 동 법률은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함.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3.12~3.25)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동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판례]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증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 두 51594 판결(심리불속행)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 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나(대법원 81누412, 대법원 97누15722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명목의 금원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예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증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인 바(대법원 2009두19984),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 두 53958 판결(심리불속행)

- 이 사건 신탁의 경우 출자자 중 하나인 A은행이 B 회사에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자금을 직접 출자하되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통하여 출자행위 및 배당금 수령행위만을 수탁자가 대신하도록 한 것이고, 신탁재산도 수탁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B 회사에 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출자 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권자에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5조는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신탁의 성질상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투자신탁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탁은 자본시장법상 투

자신탁과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운용형태, 신탁수익의 내역 및 분배방식 등이 전혀 다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신탁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인 A 은행에게만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상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례]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0 서 7818, 2021. 1. 12.

- 이 건 합병당시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점,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사항에 한정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서1802)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인 쟁점금액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0 구 1758, 2021. 1. 26.

-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는 필지가 구분되어 소유주가 다른 개별 물건으로서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접토지에서 건물 철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양도일 현재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서 8173, 2021. 2. 9.

-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쟁점기타소득을 확정신고·납부한 이상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소징수된 기타소득(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도 누락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가산세액 외에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 원천징수의 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보면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1호의 “신고·납부”와 제2호의 “부과·징수”가 대칭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1호뿐만 아니라 제2호의 경우에도 세액이 납부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는 원천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18부3440), 원천납세의무자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원천의무납세자가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전 8655, 2021. 2. 24.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객운송 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1두10011, 조심 2016부2586), 골프장용 자동차로 골프장 이용객들을 운송하는 용역(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

쟁점이니설피는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 시 손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등 (일부인용)

심사-법인-2020-0003, 2020. 11. 18.

- 청구법인과 게임개발사는 개발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이는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약정은 성공적인 게임 출시를 위하여 게임개발사로 하여금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개발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어 더 이상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니셜피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들어 개발사가 언제라도 위 금원을 반환할 일반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청구법인의 이니셜피 지급에 관한 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이니설피는 청구법인이 게임개발사로부터 게임판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지급 시의 손금에 해당함. 또한, 미니멈 개런티는 게임의 유료서비스가 시작된 후에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런닝 로열티의 선수금에 해당하며 이때 런닝 로열티는 미니멈 개런티 선수액과 상계한 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점,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세과-360, 법인세과-173)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이 중국유통사로부터 수취한 미니멈 개런티는 게임의 상용화 이후에 발생하는 런닝 로열티와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중국유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선수금은 게임의 중국 내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인 계약종료 합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예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89, 2020. 12. 29.

-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 제 36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쟁점부담금)이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154 호, 2021. 1. 12.

- 쟁점부담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며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부산고법 2019 누 21818),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10 호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물건의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그 과세대상이 건축물 또는 토지(지목변경)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쟁점부담금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양수인 영업허가 시점에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2021. 1. 14.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종업원 등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 제 9 항 제 2 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3, 2021. 1. 18.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0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40, 2021. 1. 22.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0 조 제 1 항 제 18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시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 3. 4.

- 연결모법인이 연결소득금액 계산 시 연결자법인(B 법인) 주식을 다른 연결자법인(C 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손실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연한 경우로서 이후 C 법인이 B 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으로써 B 법인 주식(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0 조의 18 제 2 항 각 호에 따른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